

주식회사 지유온(이하 "분할회사" 또는 "종속회사")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함)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분할")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지유온MP(가칭 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MP결제 및 보증서 유통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며 종속회사는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 (2) 분할을 통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사업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증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 530조의2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종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상호	사업부문
종속회사	주식회사 지유온	신설회사 사업외 부문
신설회사(가칭)	주식회사 지유온MP(가칭)	전자결제 및 구매대행

주1) 종속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종속회사 및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종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하여, 종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종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인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종속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종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인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종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분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속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종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종속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본 조 제(7)항에 따른 우발채무의 귀속,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의 주요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1년 10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1년 10월 22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21년 11월 19일
분할기일	2022년 1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2년 1월 2일
분할등기신청(예정)일	2022년 1월 2일
분할등기 경료(예정)일	2022년 1월 7일

주1)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5)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4.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및 광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주식회사 지유온 MP(가칭) 영문명 : GUONMP Co., Ltd.
목적	1. 전자상거래업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사업 3. 전기, 전자 제품 유통업 및 동대행업 4.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5.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6. 부동산매매, 임대업, 전대업 7.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8. 전자금융업 9. 통신판매업 10.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사업 11. 인터넷 유통, 경매, 광고업 및 동대행업 12. 건축, 건설, 전기 자재 유통업 및 동대행업 13. 농수축산물과 그 관련 공산품 유통업 및 동대행업 14.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공산품, 의약품원료, 화장품원료,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의료소모품, 진단시약에 대한 도소매업 및 무역업, 유통판매업 및 대행업, 수출입 및 동대행업, 제조업 15.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유통업 및 동대행업 16.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17. 창고 및 물류업 18. 구매 컨설팅 19.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 관련업 20. 대부업 21. 의류 및 관련 제품 유통업 및 동대행업 22. 채권매매업 23. 과경전자상거래업 24. 보세 및 면세사업 25. 사후면세사업 26. 인터넷금융업 27. 기타금융투자업 28. 주류 및 식품 음료의 가공판매업 29. 주류 및 식품, 음료 등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중개업 30. 식품(다류, 건강기능식품 포함)의 개발 및 제조 31. 음식점업 32.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업 33. 화장품의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34. 생활용품(비누, 칫솔, 세제 포함),일용잡화의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35. 대형 종합 소매업 36.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37.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38. 관광업종에 대한 용역 및 위탁경영사업 39.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각종상품권 관련 발행 및 도소매, 서비스업 40. 엔터테인먼트업 41. 영화, 방송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응용상품의 제작, 수출입, 유통업

	<p>42. 전시, 공연과 같은 문화사업의 주최 및 행사 대행업 43. 광고사업 44. 공연사업 4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46. 무선통신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7.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8. 무선 센서 네트워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9. 시스템, 기기보안개발 및 판매업 50. 정보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51. 정보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52.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53.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54. 출판업 55. CD제작업 56. 학원프랜차이즈업 57. 학원 운영 컨설팅업 58. 입시관련 이벤트업 59. 입시 정보 제공업 60. 학원사업 61. 서적류 도,소매업 62.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6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4. 유,무선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65.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66. 온라인 교육학원업 67. 온라인 게임개발업 68. 인터넷사업 69.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70. 소프트웨어 자문업 71. 소프트웨어의 도,소매업, 무역업, 중개업 72. 캐릭터사업 73.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74. 의약부외품 도소매업 75. 지분출자 및 투자 76. 창고임대업 및 위탁업 77. 지적 재산권의 연구개발 및 매매 알선 78. 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 79. 종이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80. 판촉물 제조 및 도소매업 81. 소화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82. 중고자동차판매업 83. 신차중개 판매업 84. 자동차렌트 및 리스업 85. 자동차 탁송업 86. 자동차 및 부품관련 무역업 87. 자동차관련 통신판매업 88. 할부금융알선업 89. 광고대행업 90.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및 위탁판매업 91. 자동차부품 판매업 9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3. 모바일앱 개발제작 및 판매업 9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95.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제작 및 판매업 9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7.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98.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중개업 및 온라인중개업 99. 상품종합중개업 및 온라인중개업 100. 기타상품중개업 및 온라인중개업 101. 중고차 수출입업 102. 온라인대출정보 서비스업 103. 대부중개업 104. 섬유 및 잡화 도소매업 105. 섬유 및 잡화 무역업 106. 위 각항에 관련된 제조업 107. 위 각 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108. 위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p>
본점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 7층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guonmp.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상기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식 400,000주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본 조 제 4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200백만원
준비금	2,940백만원

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주2) 준비금은 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7)신설회사에 이전 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존속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일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신설회사와 존속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한다. 신설회사에 귀속되거나 신설회사와 존속회사 간에 공유되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별첨3】 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것이면 신설회사와 존속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개별적인 재산의 이전 승계를 위한 절차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 간의 합의서로 특정한다.)

⑦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동산(해당 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⑧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된 소송을 포함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일체의 소송(이하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전적으로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소송 수행 방식을 정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⑨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8)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한다

(10)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11) 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과 같다 다만 별첨의 정관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12)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분할 전 후 요약 재무구조(2021년6월30일기준) (단위 : 천원)

과 목	분할전	분할후 존속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
자 산			
I. 유 동 자 산	21,838,752	18,700,957	3,137,794
(1) 당 좌 자 산	20,226,617	17,088,823	3,137,794
(2) 재 고 자 산	1,612,134	1,612,134	
II. 비 유 동 자 산	3,864,450	6,972,635	31,840
(1) 투 자 자 산	424,327	424,327	
(2) 유 형 자 산	273,039	241,200	31,840
(3) 무 형 자 산	3,063,836	3,063,836	
(4) 기타 비유동자산	103,248	3,243,272	
자 산 총 계	25,703,202	25,673,592	3,169,634
부 채			
I. 유 동 부 채	4,143,747	4,114,137	29,610
II. 비 유 동 부 채	6,823,990	6,823,990	
부 채 총 계	10,967,737	10,938,126	29,610
자 본			
I. 자 본 금	14,750,489	14,750,489	200,000
II. 자 본 잉 여 금	74,402,085	74,402,085	2,940,024
III. 자 본 조 정	1,858,808	1,858,808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435	-16,435	
V. 결 손 금	76,259,481	76,259,481	
자 본 총 계	14,735,466	14,735,466	3,140,0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5,703,202	25,673,592	3,169,634

(주1) 상기 금액은 2021년 6월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3) 신설법인의 주식은 존속회사의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

5.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은 감소하지 아니한다.

(2) 자본 감소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4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 따른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음

6. 기타 분할과 관련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단, 분할기일의 수정 또는 변경, 기타 본 분할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⑧ 각 첨부 기재사항 ⑨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 530 조의 12 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2021 년 6 월 30 일 기준)

(단위: 천원)

과 목	분할 전	분할 후 존속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
자 산			
I. 유 동 자 산	21,838,752	18,700,957	3,137,794
(1) 당 좌 자 산	20,226,617	17,088,823	3,137,794
외 화 예 금	10,343	10,343	
보 통 예 금	2,692,052	2,692,052	
단 기 투 자 자 산	199,997	199,997	
외 상 매 출 금	4,582,675	1,444,881	3,137,794
단 기 대 여 금	6,661,269	6,661,269	
미 수 수 익	16,711	16,711	
미 수 금	144,335	144,335	
반품재고회수자산	339,320	339,320	
선 급 금	1,065,246	1,065,246	
선 급 비 용	3,988	3,988	
선 납 세 금	18,035	18,03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492,646	4,492,646	
(2) 재 고 자 산	1,612,134	1,612,134	
상 품	1,493,172	1,493,172	
미 착 품	118,963	118,963	
II. 비 유 동 자 산	3,864,450	6,972,635	31,840
(1) 투 자 자 산	424,327	424,327	
장 기 대 여 금	358,147	358,147	

기 타 보 증 금	66,180	66,180	
(2) 유 형 자 산	273,039	241,200	31,840
차 량 운 반 구	94,586	62,746	31,840
비 품	19,505	19,505	
시 설 장 치	60,380	60,380	
리 스 사 용 권자산	98,568	98,568	
리스감가상각누계액	98,568	98,568	
(3) 무 형 자 산	3,063,836	3,063,836	
영 업 권	2,448,795	2,448,795	
상 표 권	181	181	
소 프 트 웨 어	1,548	1,548	
회 원 권	613,311	613,311	
(4) 기타 비유동자산	103,248	3,243,272	
자 산 총 계	25,703,202	25,673,592	3,169,634
부 채			
I. 유 동 부 채	4,143,747	4,114,137	29,610
외 상 매 입 금	637,775	637,775	
미 지 급 금	360,020	347,520	12,500
예 수 금	2,884	2,884	
선 수 금	281,612	281,612	
단 기 차 입 금	885,000	885,000	
미 지 급 비 용	256,115	239,005	17,110
유동성 전환 사채	1,152,603	1,152,603	
유 동 성 리 스부채	95,564	95,564	
반품충당부채	472,175	472,175	
II. 비 유 동 부 채	6,823,990	6,823,990	
사 채 상 환 할증금	148,475	148,475	
장기종업원급여부채	39,031	39,031	
전 환 사 채	3,696,892	3,696,892	
장 기 차 입 금	1,117,646	1,117,646	
리 스 부 채	11,738	11,738	
충당부채	1,564,403	1,564,403	
확정급여채무	245,806	245,806	
부 채 총 계	10,967,737	10,938,126	29,610
자 본			
I. 자 본 금	14,750,489	14,750,489	200,000
II. 자 본 잉 여 금	74,402,085	74,402,085	2,940,024
III. 자 본 조 정	1,858,808	1,858,808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435	-16,435	
V. 결 손 금	76,259,481	76,259,481	
자 본 총 계	14,735,466	14,735,466	3,140,0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5,703,202	25,673,592	3,169,634

(주 1)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가산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함.

(주 2)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의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천원)

과 목	분할 후 신설회사	
자 산		
I. 유 동 자 산	3,137,794	
(1) 당 좌 자 산	3,137,794	
외 상 매 출 금	3,137,794	거래처 매출채권
II. 비 유 동 자 산	31,840	
(2) 유 형 자 산	31,840	
차 량 운 반 구	31,840	영업용승용차
자 산 총 계	3,169,634	
부 채		
I. 유 동 부 채	29,610	
미 지 급 금	12,500	거래처 대금 등
미 지 급 비 용	17,110	거래처 대금 등
부 채 총 계	29,610	
자 본		
I. 자 본 금	200,000	
II. 자 본 잉 여 금	2,940,024	
자 본 총 계	3,140,0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169,634	

(주 1)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별첨 3】 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

- 특허등록 현황

명 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거래진정성확보를 위한 거래시스템	제 10-1237866 호	2013년 02월 21일
물류 및 부가세 확인을 통한 진성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대출 관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구매자금 대출관리 방법	제 10-1302632 호	2013년 8월 27일

- 특허출원 현황

명 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대출서비스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출서비스 시스템	제 09-106668 호	2009년 11월 05일

* 상기 기재된 목록이외의 추가 목록이 있을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중 일부는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공유하거나 공동 사용할 수 있음.

【별첨 4】 승계대상 소송 목록

해당사항 없음. 단, 추후 변동사항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